

福祉サービス利用者の人権・権利保障 — 子ども家庭福祉分野を中心に —

Fumiharu Yamagata 山縣文治(大阪市立大・大阪府立大, 日本社会福祉学会理事)

I. 目的

「子どもは弱者であって、保護される存在である」「福祉サービスは子どもの人権・権利を守るために存在しており、それを侵す施設や専門職は例外である」。日本において、このような考え方が覆されることになったきっかけは、子どもの権利条約の批准（1994）、保育所の措置制度が廃止（1997）されて以降の一連の社会福祉基礎構造改革における利用者本位の制度への轉換にある。

利用者本位の制度とは、本人の意思を尊重した制度である。この事を否定するつもりはないが、そのための前提を無視してこれを語ると、結果として利用者の人権・権利を侵害する可能性もある。また、とりわけ児童福祉の分野においては、本人が誰なのか（子ども自身なのか、親権者である保護者なのかということ）という大きな課題もある。入所型の児童福祉施設の職員は、さらに複雑である。

本報告は、このようなことを念頭に置きながら、福祉サービス利用者の人権・権利について、子ども家庭福祉分野を中心に検討するものである。

II. 福祉サービスの利用と人権・権利保障

1. 福祉制度と人権・権利保障

人間全般の人権・権利の構造と内容を明らかにした国際人権規約、それを基礎に、児童権利宣言を加味した子どもの権利条約では、子どもには「保護される権利」としての受動的な人権・権利、「自らを主体的に表現する権利」としての能動的な人権・権利の双方があ

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このことと、福祉制度との関係を示すと、行政処分としての措置制度は受動的な人権・権利保障に強い仕組み、一方、直接契約制などは能動的な人権・権利保障に強い仕組みとすることである。いずれの制度も、子どもの人権・権利の一側面に軸足を置いているにすぎず、子どもの人権・権利の全体を考えると、軸足を置いてない方の人権・権利をその中にどう組み込むかという新たな課題を、いずれの制度に対しても提示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ことは、福祉サービスの利用中においても同様に、人権・権利保障のためには、サービス提供者あるいは社会は、常に人権・権利の2つの側面を視野に入れておく必要がある。

2. 具体的な人権・権利保障施策

1) 福祉サービス利用との関係での人権・権利保障施策

福祉サービス利用との関係での人権・権利保障施策を利用の段階別に検討すると、表1のようなものが考えられる。

2) システムを適切に運営するための施策

前項で示した援助の中身の質的向上を図ることを通じて、福祉サービス利用者の人権・権利擁護を図るのが、第三者機関によるサービス評価制度である。これは、職員による自己評価・自己点検の意味での第一者評価、利用者の声を聞くための第三者評価、それを基礎にした外部関係者による第三者評価の三つで始めて意味を持つものである。さらに、重要なのは、この評価結果を真摯に受け止め、明日からの改善に取り組む現場の姿勢である。一連サービス評価制度を図式化したのが図1である。

Ⅲ. 検討課題

人権・権利侵害への対応においては、発生予防、重度化・深刻化の予防、再発の予防という3つの視点が重要である。日本においては、長い間が予防という視点ではなく、保護という視点で施策が展開していたために、さまざまな限界が生じていた。これを克服する為の施策と実践が重要な課題である。また、児童福祉施設などの保護を目的としたサービスが、さらなる人権・権利侵害を生じさせることも少なくなかった。これについては、早急な対応が必要である。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 권리보장

– 아동가정복지분야를 중심으로 –

Fumiharu Yamagata 山縣文治(大阪市立大學校, 日本社會福祉學會理事)

I. 목 적

‘아동은 약자이며 보호되어야 할 존재이다’, ‘복지서비스는 아동의 인권 ·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그것을 침해하는 시설과 전문직은 예외가 된다’. 일본에서 이러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는 아동권리조약의 추진(1994), 보육소의 조치제도가 폐지(1997)된 이후 일련의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에서 이용자 본위 제도로의 전환이다.

이용자 본위 제도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 제도이다. 이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그를 위한 전제를 무시하고 이것을 말하면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인권 ·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특히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아동 자신이 되는 가, 친권자인 보호자가 되는 가라는 점)라는 점이 큰 과제도 된다. 입소형 아동복지시설의 직원의 경우 더 복잡하게 된다.

본 보고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 권리에 대해서 아동가정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II. 복지서비스의 이용과 인권 · 권리보장

1. 복지제도와 인권 · 권리보장

인간 전반의 인권 · 권리 구조와 내용을 명확히 한 국제인권조약, 그것을 기초로 아동권리선언을 가미한 아동권리조약에서는 아동은 ‘보호될 권리’로서의 수동적 인권 · 권리, ‘스스로를 주체적으로 표현할 권리’로서의 능동적 인권 · 권리, 이 2가지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와와의 관계를 제시한다면, 행정처분으로서의 조치제도는 수동적인

인권·권리 보장에 강한 제도인 반면, 직접계약제 등은 능동적인 인권·권리보장에 강한 제도이다. 어떠한 제도도 아동의 인권·권리의 한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일 뿐이다. 아동의 인권·권리 전체를 생각한다면 중점을 두지 않은 편의 인권·권리를 그 안으로 어떻게 접근시킬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과제를 어느 제도에서든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서비스 이용 중에서도 같아 인권·권리보장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 혹은 사회는 항상 인권·권리의 2가지 측면을 시야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인 인권·권리보장시책

1) 복지서비스 이용과의 관계에서의 인권·권리보장시책

복지서비스 이용과의 관계에서 인권·권리보장시책을 이용단계별로 검토하면 표1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2) 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한 시책

앞에서 제시한 원조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권리옹호를 꾀하는 것이 제3자 기관에 의한 서비스 평가제도이다. 이것은 직원에 의한 자기평가·자기점검의 의미인 제1자평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제2자평가, 이것들을 기초로 한 외부 관계자에 의한 제3자평가, 이 3가지가 모여 처음으로 그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이 평가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드리고 다음 날부터 개선에 힘쓸 필드의 자세이다. 일련의 서비스 평가 제도를 그림화한 것이 그림1이다.

Ⅲ. 검토 과제

인권·권리침해 대응에 있어서는 발생예방, 중도화·심각화 예방, 재발예방이라는 3가지 시점이 중요하다. 일본은 예방이라는 시점이 아닌 보호라는 시점에서 시책이 전개되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과 실천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거듭하여 인권·권리침해를 하는 것도 적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급한 대응이 필요하다.